|  |  |  |
| --- | --- | --- |
|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財企[2011] 제6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 단독배정 시 재정청(국),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 신쟝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 관련 중앙관리기업:  우리나라 사물의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물의 인터넷 특별자금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등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발급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집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재정부에 반영해주기 바란다.  별첨: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재 정 부  2011년 4월 6일  **사물의 인터넷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우리나라 사물의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자금의 인도, 부조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사물의 인터넷의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함)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재정예산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특별자금은 중앙 재정예산에 배정하여 사물의 인터넷의 발전, 응용, 서비스 등에 전속 사용한다.  **제3조** 특별자금 사용 시에는 기업의 자주적 혁신지원에 중점을 두고 기업주체, 시장지향, 산업․대학교․연구소가 결합된 기술혁신전략을 구현하며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 산업정책과 지역 발전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특별자금 사용 시에는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특별자금 사용의 규범화, 안전, 능률을 보장해야 한다. 특별자금은 산업동맹에 의한 기업의 사물의 인터넷 발전과 응용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 특별자금은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  재정부에서는 특별자금에 대한 예산관리, 프로젝트별 자금 분배 및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동시에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특별자금의 연도 지원방향과 중점을 확정하고 재정부와 회동하여 프로젝트를 평가심사하며 프로젝트 지원계획을 확정하는 동시에 프로젝트의 실시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제2장 지원범위와 지원방식**  **제5조** 특별자금의 지원범위에는 사물의 인터넷 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 표주의 연구와 제정, 응용시범과 보급, 공공서비스 플랫폼 등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제6조** 프로젝트 신고단위는 하기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한 독자적인 법인이여야 한다.  (2) 재무관리제도가 건전하고 회계신용 및 납세신용이 양호해야 한다.  (3) 재무상황이 양호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재무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전문기술원이 최소 15명이고 그중 고급직명 소유자가 최소 5명이여야 한다.  (5) 상응한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성(부)급 이상의 인정을 받은 기술성과 등 개발성과 및 상응한 시장응용토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 프로젝트 신고단위는 하기 자료들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1) 법인 영업허가증 부본 및 회사정관(카피 본에 직인 날인)  (2) 프로젝트의 사업성 연구 보고서  (3)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그 전연도 회계보고서와 감사보고서(카피 본에 직인 날인)  (4) 상응한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나 성(부)급 이상의 인정을 받은 기술성과 등 증명자료 및 이미 개척한 시장응용 증명자료(카피 본에 직인 날인)  (5)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8조** 특별자금의 지원방식은 무상지원이나 할인이자 대출방식을 취한다. 특별자금을 신청하는 1종 프로젝트는 원칙상 1종 지원방식을 취한다.  무상지원방식은 주로 자유자금을 위주로 투입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할인이자 대출방식은 주로 은행대출자금을 위조로 투입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원칙상 기술의 연구개발, 포준의 연구와 제정, 공공서비스 플랫폼 유형의 프로젝트는 주로 무상지원방식을 취하고 산업화, 응용시범과 보급 유형의 프로젝트는 주로 할인이자 지원방식을 취한다.  **제9조** 무상지원 액수나 할인이자 대출의 이자비율은 재정부에서 특별자금의 연도 예산배정 및 연도프로젝트 지남을 보아 확정한다.  **제10조** 이미 기타 루트를 통하여 재정자금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는 특별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자금의 신고와 심사확인**  **제11조** 특별자금은 프로젝트별 관리방법을 취한다.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 재정부와 회동하여 국가의 거시적 경제정책, 산업정책 및 업계 발전기획에 따라 연도 프로젝트 지남을 검토하여 제정함으로써 특별자금의 연도 지원방향과 중점을 명확히 한다.  **제12조** 성급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는 동급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연도 프로젝트지남에 따라 본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초심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13조** 성급 재정부서에서는 동급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초심의견에 따라 총괄 심사한 후 프로젝트 추천명단과 신청 자료를 상급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중앙관리기업은 직접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에 신고하고 주앙부서(단위)의 소속기업은 그 관리부문을 경유해서 신고해야 한다.  **제15조**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동급 재정부와 회동하여 전문가 심사 제도를 수립하고 기술, 재무, 시장 등 면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신고한 프로젝트를 심사하거나 전문 컨설팅기구에 위임하여 평가하게 해야 한다.  **제16조** 산업 및 정보화부에서는 동급 재정부와 회동하여 전문가의 심사의견이나 전문 컨설팅기구의 평가의견을 검토한 다음 연도 프로젝트 지원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재정부에서는 연도 프로젝트 지원의견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자금 및 지원방식을 확정하고 특별자금 예산지표를 하달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즉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제18조** 프로젝트 수행단위에서는 입수한 특별자금을 국가 통일 재무회계 제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장 감독 검사**  **제19조** 각급 재정부서와 동급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는 특별자금 사용상황과 프로젝트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보강하고 특별자금 사용상황과 프로젝트 진척상황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부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0조** 중앙 급 프로젝트 수행단위는 프로젝트 준공 후 3개월 내에 프로젝트 실시상황과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 급 프로젝트 수행단위는 프로젝트 완공 후 3개월 내에 프로젝트 완공상황과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성급 재정부서와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성급 재정부서와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는 프로젝트 완공 후 6개월 내에 프로젝트 완공상황과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총괄하여 재정부와 산업 및 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1조** 단위에서 상황을 조작하여 특별자금을 사취하고 특별자금을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에서《재정부의 불법행위 처벌 처분 조례》(국무원 령 [2005] 제427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3년간 프로젝트 신고자격을 취소한다. 불가항력을 제외한 사고로 프로젝트의 실시를 중단한 경우 재정부에서 조달한 특별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성급 재정부서와 산업 및 정보화 주관부서에서는 당지 실정에 따라 이 방법을 참조하여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 이 방법은 재정부에서 산업 및 정보화부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 **关于印发《物联网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的**  **通知**  财企[2011]64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有关中央管理企业：  　　为促进我国物联网健康发展，规范物联网发展专项资金的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等法律法规，我们制定了《物联网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现予印发，请遵照执行。执行中有何问题，请及时向我们反映。  　　附件：物联网发展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  　　　　　　　　　　　　　　　　　　　　　　　　　　　 财政部　　　　　　　　　　　　　　　　　　　　　　　　　 二〇一一年四月六日  **物联网发展专项资金管理**  **暂行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促进我国物联网健康发展，充分发挥财政资金的引导和扶持作用,规范物联网发展专项资金（以下简称专项资金）的管理，根据财政预算管理规定，特制定本办法。  **第二条** 专项资金是由中央财政预算安排，用于支持物联网研发、应用和服务等方面的专项资金。  **第三条** 专项资金的使用应当突出支持企业自主创新，体现以企业为主体、市场为导向、产学研用相结合的技术创新战略，符合国家宏观经济政策、产业政策和区域发展政策，坚持公开、公正、公平的原则，确保专项资金的规范、安全和高效使用。专项资金鼓励和支持企业以产业联盟组织形式开展物联网研发及应用活动。  **第四条** 专项资金由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各司其职，各负其责，共同管理。  　　财政部负责专项资金的预算管理、项目资金分配和资金拨付，并对专项资金的使用情况进行监督检查。  　　工业和信息化部负责确定专项资金的年度支持方向和支持重点，会同财政部组织项目评审，确定项目支持计划，并对项目实施情况进行监督检查。  **第二章 支持范围与方式**  **第五条** 专项资金的支持范围包括物联网的技术研发与产业化、标准研究与制订、应用示范与推广、公共服务平台等方面的项目。  **第六条** 项目申报单位应当具备以下资格条件：  　　（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注册的独立法人；  　　（二）财务管理制度健全，会计信用和纳税信用良好；  　　（三）财务状况良好，具备承担项目的财务投资能力；  　　（四）专业技术人员不少于15人，其中高级职称不少于5人；  　　（五）拥有相应的专利、软件著作权或省部级以上认定的科技成果等研发成果，以及具有相应的市场应用基础。  **第七条** 项目申报单位应同时提供下列资料：  　　（一）法人执照副本及章程（复印件并加盖单位公章）；  　　（二）项目可行性研究报告；  　　（三）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上一年度会计报表和审计报告（复印件并加盖单位公章）；  　　（四）相应的专利、软件著作权或省部级以上认定的科技成果等证明材料，以及已开展的市场应用方面的证明材料（复印件并加盖单位公章）；  　　（五）其他需提供的资料。  **第八条** 专项资金的支持采用无偿资助或贷款贴息方式。申请专项资金的项目原则上只采用一种支持方式。  　　无偿资助方式主要支持以自有资金为主投入的项目，贷款贴息方式主要支持以银行贷款为主投入的项目。原则上，技术研发、标准研究与制订、公共服务平台类项目，以无偿资助方式为主；产业化、应用示范与推广类项目以贷款贴息方式为主。  **第九条** 无偿资助额度或贷款贴息比例，由财政部根据专项资金年度预算安排及年度项目指南确定。  **第十条** 已通过其他渠道获取财政资金支持的项目，专项资金不再予以支持。    **第三章 专项资金的申请与审核**  **第十一条** 专项资金采取项目管理方式。工业和信息化部会同财政部根据国家宏观经济政策、产业政策以及行业发展规划，组织研究编制年度项目指南，明确专项资金年度支持方向和支持重点。  **第十二条** 省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会同同级财政部门根据年度项目指南，组织做好本地区项目的初审工作。  **第十三条** 省级财政部门应会同同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依据项目初审意见，将审核汇总后的项目推荐名单和申请材料上报财政部与工业和信息化部。  **第十四条** 中央管理企业直接向财政部与工业和信息化部申报，中央部门（单位）所属企业通过归口管理部门申报。  **第十五条** 工业和信息化部会同财政部建立专家评审机制，组织技术、财务、市场等方面的专家对申报项目进行评审或委托专业咨询机构进行评估。  **第十六条** 工业和信息化部会同财政部依据专家评审意见或专业咨询机构评估意见，研究提出年度项目支持意见。  **第十七条** 财政部根据年度项目支持意见，确定项目资金及支持方式，下达专项资金预算指标，并根据规定及时拨付资金。  **第十八条** 项目承担单位收到专项资金后，按国家统一的财务会计制度规定处理。    **第四章 监督检查**  **第十九条** 各级财政部门与同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加强对专项资金使用情况和项目实施情况的监督检查，对专项资金使用情况和项目实施进展情况采取定期或不定期检查。  **第二十条** 中央级项目承担单位应在项目完成后3个月内向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报送项目完成情况及专项资金的使用情况；地方级项目承担单位应在项目完成后3个月内向省级财政部门与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报送项目完成情况及专项资金的使用情况；省级财政部门会同同级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于项目完成后6个月内向财政部、工业和信息化部报送项目完成情况及专项资金使用情况的总结报告。  **第二十一条** 对弄虚作假骗取专项资金、不按规定用途使用专项资金的单位，财政部依据《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国务院令[2005]第427号）的有关规定进行处罚，并取消三年内的申报资格。项目因故中止（不可抗力因素除外），财政部将收回全部或部分专项资金。  **第五章 附 则**  **第二十二条** 省级财政部门与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可根据本地实际情况，比照本办法制定具体的实施办法。  **第二十三条** 本办法由财政部会同工业和信息化部负责解释。  **第二十四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